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

□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(AH040)

- (산정방법)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5894호, '21.11.26.)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
- (적용기간) 동 기준은 2024. 5. 1. 진료분부터 적용

□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(AK500,501,502)

- 산정방법
 -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(보험급여 과-33호, '24.1.3.)에 따른 수가 산정은 **종료**함
 -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**종료**함
 - 코로나19 입원환자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」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및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
- (적용기간) 동 기준은 2024. 5. 1. 진료분부터 적용

□ 코로나19 진단 검사

○ **(산정방법)** 아래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급여기준(제2024-73호)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**별도산정**함

- 아래 -

- 누680가 다종그룹1-(13) SARS-CoV-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
- 누730 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
- (적용기간) 동 기준은 2024. 5. 1. 진료분부터 적용 ~ 별도안내시